

김기창  
서울 성북구 안암동 5가 xxxxx  
전화 010 xxxx xxxx  
keechang@fastmail.fm

(우)110-777, 서울 종로구 세종로 100

정보통신부  
정보보호기획단  
서병조 단장님 귀하

### 제목: 공인인증기관 관련

2007.4.26.자 정보통신부 장관의 민원회신 관련입니다.

“금융결제원의 가입자 S/W도 ... 한국정보보호진흥원으로부터 점검을 받았습니다”라고 회신하셨는데,

1. 기술규격6.1은 “사용자가 인증서 사용을 위해 사용자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받아 이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최상위인증기관 인증서의 유효성 확인절차를 삽입하여 사용자가 최상위인증기관의 신뢰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을 **제공해야 한다**”고 규정하고 있습니다(제6항). 한국전자인증(주) 등이 제공하는 가입자 소프트웨어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.<sup>1</sup> 금융결제원의 가입자 소프트웨어도 이를 충족하는지?
2. 점검받은 가입자 소프트웨어를 금융결제원이 “직접” 제공하는지? 그렇다면, 그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URL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3. “등록대행기관을 통하여” 제공한다면, 금결원의 어떤 등록대행기관들이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점검을 받은 S/W를 제공하고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
“현행 전자서명법령에 따르면, 은행이 공인인증기관의 S/W를 이용할지, 전문보안업체의 S/W를 이용할지는 은행의 영업상의 자율선택 사항입니다”라고 회신하였는데,

1. 근거 규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2. 전자서명인증업무지침 제24조 제1항은 “공인인증기관은 공인인증기관 지정 시 심

1 [http://openweb.or.kr/crosscert\\_rootca.png](http://openweb.or.kr/crosscert_rootca.png)

사를 받은 시설 및 장비를 이용하여 공인인증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”고 규정하는데, 등록대행기관(RA)을 통하여 인증서를 발급해 주는 경우에는(즉, 등록대행기관을 이용하기만 하면) 이 요건은 충족되지 않아도 되는지?

3. 금융결제원은 가입(신청)자들이 “은행의 인터넷 뱅킹 홈페이지에서” 공인인증서를 발급받도록 하고 있는바,<sup>2</sup> 은행이 금융결제원의 RA 자격으로 제공하는 가입자 소프트웨어는

-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점검을 받지 않았으며,
- 공인인증기관이 코드사인한 것도 아니며,<sup>3</sup>
- 설치단계에서 이용자에게 최상위인증기관 인증서 유효성 확인 수단을 제공하지 않을 뿐 아니라,
- 잡다한 사설 업자의 자기서명 인증서들이 이용자도 모르는 사이에 이용자의 컴퓨터에 최상위인증기관 인증서로 설치되도록 조작되어 있고,<sup>4</sup>
- 일부 업자의 자기서명 인증서는 이용자가 이를 제거할 수도 없도록 되어 있는바,<sup>5</sup>

이러한 RA제공 가입자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“공인”인증서를 발행하는 금융결제원의 인증업무 수행이 적법한지?

4. 다른 공인인증기관들의 경우, 가입자가 해당 공인인증기관의 홈페이지에서 발급절차를 수행하든, 이들의 등록대행기관(우체국, 각 지방 상공회의소 등)의 홈페이지에서 발급절차를 수행하든, 동일한 가입자 설비가 제공되며, 이들 가입자 설비는 모두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점검을 받았으며, 법령이 정하는 요건도 충족하는 것으로 보이는데, 이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

2007.5.5.

김기창 드림

---

2 <http://openweb.or.kr/yessign.png>

3 [http://openweb.or.kr/citibank\\_codesign.png](http://openweb.or.kr/citibank_codesign.png)

4 [http://openweb.or.kr/softforum\\_rootca.png](http://openweb.or.kr/softforum_rootca.png)

5 [http://openweb.or.kr/citibank\\_rootca.png](http://openweb.or.kr/citibank_rootca.png)